

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

(의안번호 제69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6. 28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7. 13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7.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
-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
-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
- 기금결산보고서
-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
-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0년도 결산 총 세입예산 현액은 1,541억432만4천원이었으며, 당초 계획보다 248억3,554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이었음.
-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,454억7,906만원이 수납되어졌고, 미징수로 출납 결손액 8,768만8천원과 미수납이월액 19억486만9천원이었음.
- 특별회계로는 98억3,376만8천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금은 9,193만6천원이었음.

- 총 세출예산 현액은 1,541억432만4천원이며, 그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,447억4,044만5천원 중 1,024억7,894만2천원이 지급되고 365억7,379만4천원은 이월, 나머지 56억8,770만8천원은 불용처리되어 있음.
-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3억6,387만9천원중 82억7,975만1천원이 지급되고 1억3,632만6천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9억4,780만원은 불용처리 되어졌으나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 감독,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시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·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,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1.6.1부터 6.20까지 20일간 결산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·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, 예비비 불용처리된 과정, 이월액 과다발생 원인, 공유 및 공유재산 관리실태, 시책사업의 적정성, 효율성,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확인하고 증빙자료 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연도 후반기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7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